

II. 업무 프로세스



1. 심사 기준

□ 사전관리 · 종결심사

가. 의뢰 기준

- ▷ 원상복구 전, 사고 배당 일로 부터 14일 이내 (외부손사 위임 요청 건 2일 이내)
- ▷ 사고조사 및 면부책 확정 후

나. 유의 사항

- ▷ 심사 비승인 건 종결 금지
- ▷ 지역 또는 피해자 성향 근거로 미수선 협의 및 면담 등을 갈음하기 위한 의뢰 요청
- ▷ 외부손사 위임 의뢰 관련 지침 위반

다. 의뢰 대상

- ▷ 공통 : 과실상계 후 1천만원 이상 건(피구상 건 제외)
 - 사전관리 : 추산 1천만원 이상 예상 시
 - 종결심사 : 종결 보험금 1천만원 이상 확정 예정 시
- ▷ 대상
 - **5톤이상 화물차, 1톤 이상 탑차, 건설기계, 캠핑카, 특수장치장착차량, 장례차량 및 농기계 등**
(※외부손사 위임 전 건 / 금액 무관, 종결심사 필수)
- ▷ 비대상
 - 5톤 미만 일반 화물차(카고트럭), 다인승, 버스, 승용차 개조 등

라. 특장차 심사자 : 최연종 과장 (010-5151-2142)

II. 업무 프로세스



2. 위임 기준 [※ 외부손사 의뢰 대상 기준 정리]

□ 공통 / 일반대물

구 분	금액 기준	의뢰 대상	위임 불승인	예외 승인
공 통	과실상계 청구기준	배당(입고)일 기준 2일 이내	원상복구 완료 건, 업계 피구상	피해자 입증 자료 반증 가능 건
		약관상 면·부책 판단 완료 건	과실 미확정 당사자 대물 건	제3의 피해물 당사 선처리 건
		위임 시 손해액 절감 예상 건	전손 등 수리비가 시세 초과	(특수)피해물 시세 확인 어려움
		과실 책임 60% 이상 건	현저한 책임 한도 초과	피보험자 한도초과 비용부담 동의
일반 대물	1,000 (이상)	분쟁 심화 등 신속한 판단 필요	담당자 조사·안내 전무	분쟁 확대 예상
		특수한 피해물 전문지식 필요	제휴업체 의뢰 건	비제휴 복합 복구, 영업손실 발생
		단, 500만원 이상 건으로 손해액 감소가 가능한 건 승인 가능, 사전 견적 필수 등재		

II. 업무 프로세스

2-1 위임 기준 [※ 외부손사 의뢰 대상 기준 정리]

□ 특장차 / 이륜차 / 기술자문

구 분	금액 기준	의뢰 대상	위임 불승인	예외 승인
특장차 농기계	1,000 500	AOS 미사용업체 수리 건	공식 서비스센터 입고 수리 휴차료 등 간접손해만 의뢰	과청구 분쟁업체 입고 건 과청구 미수선 수리비 요청 건
▷ 1톤 트럭, 버스, 자가용 차량 및 AOS 청구 수리 건 의뢰 불승인				
이륜차 자전거	700 500	외산 이륜차	중고 시세 500만원 미만 건	분쟁 A/S 입고 실수리 건
		수입 자전거	수리 실익이 없는 전부 손해	명확한 시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손해액 관련 민원 예상으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승인 검토				
기술자문	500	튜닝품(휠, 머플러, 에어댐, 오디오) 커스텀도장, 랩핑, 개조 엔진미션	일부 손상 전부 교체 비용 청구	단종 여부 불확실 건
			정품 단가확인 가능 부품	
			인과관계 조사 요청 건	
▷ 분쟁해결을 위한 엔진·미션 손상 여부(당연 조사) 승인 불가 [ex: 단순 추돌사고 엔진 교환 요구 등]				

III. 휴차료 및 간접손해 손해사정

1-1. 대차료 지급기준 [※ 대차(유)]

※ 대차를 하는 경우 구비서류 : 1. 대여 계약서 (일자, 금액, 대여차량정보 必)

2. 대여차량 자동차등록증
- 3 . 실제대여차량 사진
4. 입금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5. 대여차량 운행기록부

III. 휴차료 및 간접손해 손해사정

H 현대하이카손해사정

2. 대차료 지급기준 [※ 대차(무)]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 - (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정비작업시간 초과(160H) 확인서 징구 必]

III. 휴차료 및 간접손해 손해사정

H 현대하이카손해사정

2-1. 대차료 지급기준 [분쟁사항공유-대차(무)]

예시 1)



상장순위 실사 내용									
상장번호	상장일자	상장주체	상장구분	상장지역	증권정보		증권현황		
					증권명	증권코드	상장수량	상장일자	상장구분
00000000000000000000	2024-01-01	한국증권	주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한국주식 A	K00000000000000000000	1,000,000	2024-01-01	상장주체
증권현황									
상장주체	상장일자	상장구분	상장수량	상장일자	상장구분	상장수량	상장일자	상장구분	상장수량
상장주체	2024-01-01	주식	1,000,000	2024-01-01	상장주체	1,000,000	2024-01-01	상장주체	1,000,000
상장주체	2024-01-01	주식	1,000,000	2024-01-01	상장주체	1,000,000	2024-01-01	상장주체	1,000,000
상장주체	2024-01-01	주식	1,000,000	2024-01-01	상장주체	1,000,000	2024-01-01	상장주체	1,000,000

예시 2)

卷之三

피해차량 수리 후 첫재된 장비까지 수리되어야 도로공사에 투입되므로 수리기간은 30일 정도 예상되나 피해자와 24일간의 유틸리티를 자금여부로 협의하였습니다.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을 휴차료의 30%를 지급합니다.

- 산식 : 3톤아하 69,470원 × 30% × 24일 = 500,000원(단수조정)

○ 숭용·숭합·화류자동차

자료	구분	구제표
택시	일반	44,420
	모범	53,330
	전형	47,190
	1인 이하	47,190
	2인 미만	58,330
	3인 미하	69,470
	4인 이상	80,510
	5인 이하	93,420
	6인 미하	102,720
	7인 미하	105,620
	11인 미하	104,870
	12인 미하	109,960
	15인 미하	123,940
	15인 초과	5,200

※ 지급기준 한도 내 => 대차료 합의 // 지급한도 초과 요구시 => 법적 대응 필요!
(KB손보, DB손보 소송으로 응대 中)

IV. 외부손사 평가항목



■ 외부손사 업무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피해율 과정관리 [15]	PRM 보고사항 입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보고(3) : 피해율 최초 입회, 피해자 요구사항 및 주산보험금 기재 ▶ 중간보고(4) : 작업 진행사항 및 피해자 연락사항 등 중간 진행사항 기재 ▶ 최종보고(3) : 최종 지급 보험금 및 최종 진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별 내용 부실 및 누락 시 각 항목 배점 내 감점 적용
	보고 신속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피해율 별 보고 기준일 초과 시 배점 한도 내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 1일 당 0.5점 감산
보고서 품질 [55]	피해율입회 및 과실조사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별 필요 조사 이행 여부 및 충빙 외전선 청부 ▶ 사용자책임, 관리 과실 및 관리기관 대응여부(공문 등) ▶ 피해율 최초, 중간, 최종입회 사진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 관련 조사 부실 시 감점 적용 ▶ 피해율 입회 사진 누락 시 감점 적용 ▶ (실제 수리인 경우 특구안로 전 보험금 지급 시 최종입회 누락 감점 적용) ▶ 5점씩 감점 적용
	자재단가 및 감가조사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가액, 재조달단가, 실거래가 등 단가조사 및 감가 및 잔존가 관련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 관련 시설이력가드 및 내입력, ▶ 대수선 이력 및 비교견적을 관련 증빙 ▶ 관련자료 누락 및 오류신정 시 0점 적용
	보고서 품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승해 및 간접승해 산출내역 적정성 및 보고서 내용 부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인원 및 인건비 적용 확정성 ▶ 간접승해 산출내역 및 관련 일증자료 (국세청 자료, 표준소득률 적용증, 유업일수 등) ▶ 수수료·교통비 산정 및 보고서 내용 부실 0점 적용
	손해액 관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금액(직·간접승해) 기준 최종 지급액 (청구금액) · (손해사정액) · (수수료) = 손해감소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금액은 사전견적서 및 청구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일증자료에 기준 ▶ 손해감소율로 감산평가 진행 10% 미만 0점 / 20% 미만 2점 / 30% 미만 4점 / 40% 미만 6점 / 50% 미만 8점 / 50% 이상 10점
민원 (감산평가)	대내,외 민원 / V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민원 발생시 감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C, 대내민원 건당 5점 감점 ▶ 대외민원 건당 10점 감점 ▶ 단, 일체속 짬못이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를 평가 제외 ▶ 단기 최대 10점 감산
보험사기 적발 (가산평가)	보험사기 적발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 적발시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평가 건당 2점씩 가산 ▶ 단기 최대 10점 가산